

特殊建物 時價決定 基準에 대한 考察

趙 正 守

〈特殊保險 1 部・次長〉

1. 沿 草

現行 使用하고 있는 特殊建物 時價決定基準額表(以下 基準額表라 한다)는 火災로 因한 人命 및 財產上의 損失을 豊防하고 迅速한 災害復舊와 人命 被害에 對한 適正한 補償을 함으로서 國民生活의 安定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1973년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이 施行됨에 따라 特殊建物의 所有主는 義務의으로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以下 特約付火災保險이라 한다)에 加入토록 하는 規定(法 第5條)과 加入對象 特殊建物의 特約付火災保險加入時의 保險金額은 時價 金額으로 하여야 한다(法 第8條)는 規定에 依據 時價決定을 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1973년 6월 6일 制定, 最初로 適用하게 되었으며 1974년 4월 10일에 1次, 1975년 4월 26일에 2次, 1977년 3월 30일 3次로 改正하여 現在에 이르는 동안에 利用上의 諸般問題 및 矛盾點들을 補完하여 왔다.

한편 現行 基準額表는 1976년 火

災險協會 및 鑑定院 關係者들과 數次의 協議를 거쳐 改正 方向 및 基本指針을 마련하여 1976년 8월에 서울 工科大學 附設 研究所에 用役을 依頼하여 同 結果를 數次에 걸쳐 檢討 수정乃至 補完 完成하여 關係當局의 承認을 받아 1977年 4月 1日 부터 施行하게 되었다.

2. 時價決定基準額表의 必要性

(1) 必要性

特殊建物 時價를 決定하는데 있어 徵稅資料 또는 鑑定 評價資料를 使用하지 않고 別度로 基準額表를 만들어 使用하는 理由는 商法 및 保險約款에 「保險會社가 補償할 損害額은 그 損害가 發生한 때와 끝에 있어서의 保險의 目的의 金額에 따라 決定한다」라고 規定되어 있고 따라서 保險金額이 保險價額에 未達하는 경우에는 一部 保險으로 保險會社가 補償하는 金額은 保險金額의 保險價額에 대 한 比率에 따라 算定되기 때문에 被保險者로서는 損害額의 全額을 補償 받지 못하는結果가 된다.

- ◆ 政府가 지난 3월 30일자로 特殊建物 時價決定
- ◆ 基準額表를 改正하여 現實化함에 따라 同基準額表에 對하
- ◆ 의 편의를 圖謀하기 為하여 同基準額表에 對하
- ◆ 的 使用에 따른 被保險者の 理解 增進과 利用者
- ◆ 여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또한 保險金額이 保險價額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超過保險으로 保險에 依한 不當利得禁止의 大原則下에 超過하는 金額은 無效가 되기 때문에 被保險者로서는 不必要한 保險料를 負擔하는 結果가 된다.

따라서 特殊建物의 保險價額은 現時價를 保險價額으로 하고 있는 限 保險金額과 保險價額은 相應하여 하므로 時價 基準額表를 別途로 만들어야 하는 當爲性이 있는 것이다.

(2) 法的根據

“火災로 因한 災害 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 第8條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依據 特殊建物의 時價는 特殊建物 時價 決定 基準額表에 依한 金額을 基準으로 하여 決定하도록 하고 同法 施行規則 第2條의 第1項은 “法 第8條 第1項 第1號에 規定된 特殊建物의 時價는 別表의 特殊建物 時價 決定 基準額表에 依한 金額을 基準으로 하여 決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3. 時價決定基準額表의 作成概要

(1) 作成概要

特殊建物의 時價를 決定하는 것이 그렇게 容易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 많은 契約을 通하여 體驗한 바 있다. 따라서 同基準額表를 作成하는데 있어서 수 많은 建物을 標本(sample)으로 選定하여 分析 檢討한 統計에 依據 作成되어야 바람직 하나 그려한 建物들의 建築當時의 工事條件 施工者の 能力等 工事費를 左右하는 諸般要因을 일일이 確認할 수가 없고 正確한 統計를 얻기가 쉽지 않으므로 同基準額을 算出하는데 있어서는

基準建物의 用途, 規模, 構造, 型式, 主要內外部마감재료 및 基本設備等을 假定하고 또한 工事當時의 建築資材 價格 勞賃 等에 따라 建築工事費에 褊은 差異가 發生하므로 이러한 現實을 考慮하여 本基準額表는 各建物의 中級과一般的으로 使用되는 材料를 假定하고 이에 따라 上中下級으로 建物을 定하였으며 普遍의 工程 및 工法等을 基準(standard)으로 하여 工事が 이루어졌다는 假定下에, 材料費 및 人件費는 物價時勢表 및 基準품셈표를 適用하여 作成되었으며 可能限한 用途, 規模 및 形態에 있어서 建物에 알맞게 適用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本基準額表는 多量의 內譯書를 作成하고 附帶 設備의 種類建物의 用途에 따른 細分化로 價額決定의 正確性을 期하도록 하였으며 對象 建物과 算出 基準 建物의 마감材料가 다를 경우 對象 建物 마감의 一位代價表를 適用하여 브다 더 實際 工事費에 近似한 費用을 算出할 수 있게 하였고 使用部分別로 物價의 變動에 따라 一位代價表에 變動 物價를 代入 시킴으로서 容易하게 變動된 建物 價額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本基準額表는 建物에 對한 時價 基準額을 可能한範圍내에서 標準화할 수 있도록 하여 基準 建物과 相異한 建物에 對해서는 適用 如何에 따라서 有効 適切하게 使用할 수 있게 하였다. 품셈은 建設部 發行의 建設工事 標準품셈표를 基準으로 하였으며 物價는 1876년 9월을 基準으로 勞賃은 政府 建設 勞賃 單價를 適用하였다.

한편 改正前의 基準額表와의 差

異點을 간단히 살펴 보면

첫째, 改正前 基準額表는 料率書上의 危險等級別에 依한 各規定에 適用하도록 調整하여 構造別 類形別로 分類되었던 것을 現行 改正 基準額表는 料率書上의 條件을 떠난 建物의 순수한 構造別 外壁形態別 規模別(層數)로 分類되었기 때문에 料率書上의 제약으로 因한 價額算定의 矛盾點을 排除함으로써 實際 建築費를 現實에 알맞게 算出할 수 있도록 한 点.

둘째, 自動火災探知機施設, 消火栓, 冷溫房機, 電梯施設等一部 特殊設備을 基本 建築工事費에 一括 包含시켜坪當價額이 算定되어 있으므로 이로 因하여 現實과 다소 差異가 있어 建物所有主와 建物 時價決定에 异見이 있었던 点을考慮 現行 時價決定 基準額表上에서는 同特殊設備의 有無에 따라 完全히 分離시켜 別途로 加算토록 한 点.

셋째, 基本 建物 價額 算出 基礎資料를 日本의 資料를 많이 參考로 하여 作成되었기 때문에 우리 現實과는 不適合한 点이 없지 않으나 現行 基準額은 우리 나라의 現在 있는 建物을 標本으로 抽出하여 算出한 만큼 現實化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넷째, 建物의 等級 基準이 모호하게 된 点을 同 基準額表上에서는 内部마감 材料 窓戶 외벽마감재료 防水 等의 程度에 따라 上中下로 각各 分類하여 建物의 程度 差異의 基準을 마련 細分化 하였으며

다섯째, 內譯書 作成 根據를 28個에서 389個로 具體化 하였으며

여섯째, 一位代價表 作成 方法에 있어서도 標準 품셈표에 現場 勞賃 單價를 基準으로 한 点 等을 들 수

가 있다.

(2) 適用 建物의 類別 分類

同 基準額表의 適用은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 第 2 條 및 同法 施行令 第 2 條에 規定한 特殊建物에 限하여 適用하도록 하였다.

한편 適用 建物의 分類는 事務室, 호텔, 여관, 아파트, 百貨店, 屋內 販賣場, 병원·의원·진료소, 학교, 駐車場, 卷영조·슈트리오, 料理店 · 유홍음식점, 체육관·강당, 영화관·극장, 市場 및 工場으로 分類하였다.

(3) 建物의 上 中 下 分類 基準

同 基準額表는 建物의 用途別 構造別 및 規模別 建物의 바닥, 壁, 천정, 치장設備 等의 程度에 따라 上 中 下로 区分하여 그一般的인 建物을 基準으로 하였으며 主要 業種別 分類 基準은 別表 2와 같이 分類 되었다.

(4) 建物의 価額 設定 基準

特殊建物의 時價 設定은 基本建物 価額과 特殊設備 価額으로 区分分離하였으나 基本建物 価額은 純工事費에 基礎設備인 排水設備, 電氣一般設備, 排管設備, 照明 및 피뢰침 等을 包含한 것이며 그以外의 建物設備인 冷·暖房設備, 승강기, 消火設備 및 其他特殊設備는 別途로 補正하도록 하였다.

한편 同 基準額表는 建物의 新築單價를 基準으로 하여 設定되었으며 當該建物의 建築設計要領 建築資材의 優劣施工 方法의 差異 使用期間 및 建物의 管理 狀態等에 따라 10%範圍內에서 加減할 수 있도록 하였다.

同 加減의 範圍를 10%로 決定한

것은 上 中 下로 細分化 함에 따른 各 級別 平均 価額의 差異 즉 上限線(upper class limit)과 下限線(lower class limit)의 갭(gap)이 約 10% 以內 이므로 同範圍를 超過하여 加減할 경우에는 上 中 下로 区分한 意義가 없으므로 同範圍以上을 加減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事前 充分한 資料蒐集에 依據, 檢討가 先行되어야 한다.

(5) 特殊設備의 適用 範圍

建物 価額 算定中 特殊設備를 別途로 加算하도록 함에 따른 그 內容을 具體的으로 살펴 보면

(a) 冷·暖房 및 衛生設備

① 暖房設備

② 방열기에 依한 暖房

③ 닉트(ducter)에 依한 暖房

④ 冷·暖房設備

⑤ 全 닉트 方式

④ 닉트 fancoil unit 方式

⑤ fancoil unit 方式

⑥ 금항설비

(a) 消火設備

① 自動 탐지기

② 屋內 消火栓 設備

③ 스프링 쿨라 設備

④ 포·분말 設備

⑤ Co₂ 消火設備

(b) 電氣設備

① 發電設備

② 變電設備

③ 電話 交換設備

(c) 運送設備

① 승강기(승객, 화물용)

② Car lift

③ Dumb waiter

④ 에스카레이터

한편 特殊建物 種別 附帶設備를 建築工事費와 參考로 살펴 보면 다

〈표 1〉 建物 工事費와 附帶設備 比率

용도별	설비별	전기설비	급배수위생	냉·온방	승강기	계
공공건물	19%	11%	16%	10%	56%	
은행	13	9	16	7	45	
사무실	18	9	24	12	63	
병원	18	18	21	12	69	
학교	9	10	12	6	37	
여관	13	14	20	7	54	
공장	18	11	9	—	38	

음과 같다.

(6) 特殊構造에 對한 別途 補正

同 基準額表上의 用途 및 構造區分에 表示되어 있지 않은 建物은 類似한 用途 및 構造에 準用하여 基準額表에 適用하며 基準額表上 適用할 수 없는 建物은 別途로 그 価額을 算定 補正하여야 한다. 즉 同一 建物內에 一部가 보링장 쌓거나 바래 等의 여려 業種이 있을 경우 그 業種의 特殊性에 따라 그 使

用部分의 特殊設備 및 內裝材 等의 価額은 別途로 加算되어야 한다 한편 主要 建物構造를 살펴 보면

(a) 建物의 基礎는 地下에 있으므로 그 構造 및 施工 狀態를 判別하기 困難하여 그 地帶의 地質 및 本建物의 構造 層數 等을 考慮하여야 할 것이며 이 部分에 大한 工事費가 所要 되었다고 判斷될 경우에는 別途로 調査하여 補正하여야 한다. 鐵筋 콩크리트 造 또는 組織 造

의 경우에는 大體로 建築工事費의 8%乃至 12%程度를 點有한다.

(나) 構造部 分인 기둥, 보, 壁體, 지붕 等이 特殊한 使用 目的에 依하여 特別히 補強되었거나 高級材料, 斷熱材 等을 使用하였을 경우 또는 層高가 通常 높이 보다 顯著하게 높을 경우는 이 部分을 別途 調査 補正하여야 한다. 따라서 工場 建物의 경우를 實例로 들면 벽체 높이가 5m~9m 미만은 12% 9m以上은 14%를 用途上 特殊壁構造는 別度로 補正하여 壁體의 工事費는 全體 工事費의 약 20% 程度를 推定하도록 되어 있다. 一般的으로 鐵筋 콩크리트造의 경우에는 骨造 部分의 建築 工事費에 對한 比率은 35% 내지 40% 程度로 推算하고 있으며 壁體 部分은 治粧部分을 包含하여 12%~15% 程度로 推定하고 있다.

(다) 窓戶 部分은 窓戶가 特殊材料(二重 防彈 유리, 스텐레스 기타 高級建材等) 또는 特殊裝置가 되어 있는 경우 別途로 調査하여 補正할 수 있으며 建築 工事費의 約 9%~11%를 推定한다. 앞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建物 構造別 工事比率를 日本 建物見積표합침례통계표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으나 日本의 特殊性을 考慮한다면 우리

나라 建物에 適用 하기에는 充分한 事前 檢討가 行先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4. 建物의 調査

建物의 評價는 여려가지의 調査活動을 通하여 展開되는 것이 特性이다.

調査活動이 正確하게 處理되었는가에 따라 建物 評價의 正確度(accuracy)가 決定 지어진다. 이와 같이 調査活動은 主로 技術의 인測面이 重要한 作用을 하게 된다. 建物 評價에는 資料의 菲集整理와 建物 狀態 調査로 나눌 수 있으며

調查 資料는 確認資料, 要因資料, 및 事例資料로 分類할 수 있다.

(1) 確認資料

確認資料는 公簿調查資料와 有形의 物의 確認資料 및 無形의 인權利의 態樣을 確認하는 경우에 必要한 資料이다. 公簿에는 登記簿, 賸本, 臺帳簿本, 各種圖面, 地籍公簿, 債權에 債務에 關한 契約書, 物權 行爲에 關한 契約書, 債料等의 領收證, 申根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 權利의 態樣을 分析하기 爲하여 所有權, 其他 權利事項을 調査하는 수도 있으나 物의 確認이 重要하여 建物에 영향을 미치는 主要한 個別의 要因인 面積 建物의 높이 構造,

設計, 設備 等의 良不 및 施工의 質과 量等에 關하여 明確히 調査되어야 하며 따라서 建物의 狀態 調査는 構造, 級數에 關한 調査와 危險調查로 區分 分離 實施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뒷 밤침을 할 수 있는 方法으로서 特殊建物에 對한 安全點檢 實施 때에 建物에 關한 充分한 資料를 菲集하여 建物現況 및 時價補助 카드를 一般物件과 工場物件을 區別 別表 樣式에 依據 契約 締結時에 擔當者가 事前에 利用할 수 있게끔 契約部署로 通報하고 있는 것이다.

(2) 要因資料

要因資料는 價格 形成에 있어서 一般資料와 個別資料로 區分할 수 있으며 一般資料에는 價格 形成 要因에 一般的인 諸要因으로 評價活動에 영향을 주는 社會的 經濟的行政의 要因資料이다. 個別資料에는 對象 物件의 個別의 特性과 地域 要因 等이 比較 檢討할 수 있는 資料로서 價格 形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特殊建物은 時價를 保險金額으로 하고 있는 만큼 同 資料는 쳐지 않게 作用을 하고 있는 點을 고려 特別法 施行規則에서 地域差等을 감안 10%의 範圍內에서 加減할 수 있게 하였다.

(3) 事例資料

事例資料는 評價 方法에 따라 必要한 資料로서 去來事例, 賃貸事例, 収益事例, 建設事例, 評價先例等 參考 資料로서 對象建物에 따라 適用할 수 있는 事例資料를 菲集整理하여야 한다.

5. 基準額表上의 諸稅 公課金

同 基準額表上의 坪當價額은 諸

〈표 2〉 建物 構造別 工事費 比率

구조별 유도별	구조별 유도별		
	전 체(%)	벽 체(%)	창 호(%)
공 온 사 방 차 호 공 평	40 30 37 36 40 34 45 37	15 15 13 13 12 15 8 13	11 17 11 9 9 12 8 11

稅公課金雜費를 加算한 金額이
包含되어 있다.

구 분	비 율(%)
建築工事費	20
機械設備工事	15
電氣設備工事	20

6. 機械設備 및 附帶裝置 에 대한 評價

(1) 根 據

機械設備 및 附帶裝置에 대한 評
價 方法은 特別法 施行規則 第2條
의 2(特殊建物 時價決定方法)에

依據 “法人稅法 行令의 規定에
依한 減價償却을 하고 都賣物價上
昇率을 참작하여 算定한 價額을 時
價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가) 適用方法

現存價額 = 取得價額 - 減價額

減價額 = 取得價額 × 總減價率

總減價率 = 經年減價率 × 經過年數

따라서 위의 方法에 依하여 現存
價額을 算出하여 取得 年度부터 評
價 時點까지의 物價 上昇率을 考慮
算定한 金額이 時價로 된다.

(나) 取得價額의 把握

評價하고자 하는 當該設備에 對한

구입 당시의 金額을 取得價額으로
하여 同 價額에는 同 施設에 對한
그 價額은 물론 登錄稅 取得稅 其他
附帶設備費用을 包含시켜야 하며 自
己建設 製作等에 依하여 取得한 機
械設備는 原材料費, 勞賃費, 製作
等에 依하여 取得한 機械設備는 原
材料費, 勞賃費, 運賃, 하역비, 수
수료, 公課金(登錄稅 取得稅), 設置
費, 其他 附帶費用의 合計金額을
取得 當時의 正常價額으로 한다.

(다) 物價指數

物價 상승율은 韓國銀行이 調查
한 都賣物價指數를 말한다. 그러나

<토 막 소식>

日本, 主要빌딩의 火災豫防實態

—2割이 「스프링클러」施設 안해—

◇ 고층빌딩의 火災는 가끔 피해의 大型化를 초래
한다. 日本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건물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화 시켰다. 이에 대한 소식을
外信을 통해 알아본다. <編輯者註> ◇

일본은 지난 74년 消防法 개정으로 기존건물에도
義務化된 「스프링클러」 설치 시한이 3월 말로써 끝
났다. 3년간의 시설개수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빌딩은 20%나 되
었다.

5년 전 1백 3명의 사망자를 내었던 大阪 千日前
백화점火災, 1백 18명의 熊本 大洋백화점火災(73년
등의 교훈이 74년 消防法을 개정케 하였으며 백화
점은 물론 모든 混用 빌딩에 「스프링클러」 설치의
의무화가 주어진 것.

섭씨 72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噴水器
인 「스프링클러」는 「消火에 만점」이라고 하지만
난점은 配管工事を 포함한 설치비용이 평당 4만圓
이나 소요되며 특히 기존건물은 천장부분을 전부
헐어야 하기 때문에 영업을 중단해야만 한다. 빌딩

의 일부에 극장, 식당등이 있을 경우 빌딩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되는데 이를 위해 막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데에서 일부 빌딩은 廢業
을 전제로써 시설개수공사를 기피하는 곳도 있다.

日本大學의 講堂은 입학·졸업식 이외에 프로페
슬링 등 일반 공개장소로도 사용되어 왔는데 일반공
개를 앞으로 계속하려면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으
로 1억圓을 새로이 투입하여야 하므로 이달부터 일
반 공개는 중지 시켰다.

유예기한을 2개월 넘겨둔 지난 1월말 현재의 조
사는 東京都내 대상빌딩중 공사완료된 合格빌딩은
불과 15%.

이달부터 消防法違反이 된 未着工빌딩은 80棟으
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는 新宿國際地館등 5棟
의 대형빌딩도 포함되어 있다.

東京消防廳은 지난 1일을 기해 각 소방서를 통
해 시설개수를 종용하는 한편 당초부터 공사계획
을 지연시킨 20개棟은 소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강
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韓銀이 調査한 綜合 都賣物價指數 보다는 “機械 및 그 부품指數”를 사용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라) 經年減價率

經年減價率 및 耐久年數는 法人稅法 施行規則에 規定한 別表를 適用하며 한편 機械設備에 對한 減價償却率의 適用은 法人이 固定資產에 對한 傷却額을 다음의 區分에 依한 傷却中 法人이 所管 稅務署長에게 申告한 傷却法에 依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① 有形 固定資產에 對하여서는 定率法(未償却 殘額法) 또는 定額

法(均等償却法).

② 無形 固定資產에 對하여서는 定額法.

(마) 定率法

當該 減價償却 資產의 取得價額에서 이미 傷却額으로서 損金에 算入한 金額을 공제한 殘額(基礎價額)에 該當 資產의 耐用年數에 따른 傷却率을 곱하여 計算한 各事業年度의 傷却範圍額이 每年 채감되도록 하는 減價 方法을 말한다. 主로 機械器具 船舶 等에 適用되는 公式中の 하나이며 減價率 및 減價 累計額은 다음 算式으로 求할 수

있다.

$$\text{減價率} = \frac{\sqrt[n]{\text{殘存價格}} + \text{再調達原價}}{\text{原價}}$$

$$\text{減價累計額} = \text{再調達原價} \times$$

$$\{1 - (1 - \text{감가율})^m\}$$

$$n = \text{耐用年數}$$

$$m = \text{經過年數}$$

또한 鑑定價格을 直接 求하는 公式은 定率法에 依한 經年 殘存價值率表를 參考로 하여 다음과 같이 求할 수 있다.

$$\text{鑑定價格} = \text{再調達原價} \times \text{現價率}$$

(殘存價值率表에 依함)

(바) 定額法

<新開發品>

☆ 투척식 消火器・防火재킷 첫 선

대형화재의 초기 진화를 위한 순찰용 소화재킷과 투척식 소화탄이 첫 선을 보였다.

지난 5월 서울 永登浦소방서 앞 마당에서는 서울시내 시장 관리인과 공장주 등 5백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소방 시범훈련을 갖고 투척 소화탄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

화재발생 경보가 울리자마자 붉은색 소화재킷을 입고 순찰을 둘던 경비원이 급히 현장에 뛰어나와 휴대하고 있던 소화탄을 던져 급한 불길을 삽고 소화탄 투척으로 약해진 불을 주민들이 물을 끼얹어 완전히 꺼버렸다.

암모니아와 인산염등을 혼합해서 영동포 소방서가 고안한 이 투척식 소화탄은 불링의 편파 같은 모양으로 종래 소화기처럼 복잡한 사전 조작이 필요없이 그대로 불의 중심점에 던지기만하면 된다.

또 소화탄 3개와 손도끼 인명구조용 루우프등을 부착, 휴대할 수 있는 순찰용 재킷의 무게는 휴대품 까지 합쳐 모두 3.5kg으로 시장 경비원등이 가볍게 입고 다닐 수 있다.

영동포 소방서는 이 재킷을 영동포 중앙시장등 화재취약지구 경비원들에게 보급시켜 착용, 순찰토록 하고 있는데 착용이 간편하고 가벼운데다 투척식 소화탄은 불 근처로 접근하지 않고도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환영을 받고 있으며 가정 상비용으로도 유용하게 되어있다.

☆ 流水檢知裝置 「아람・밸브」開發

配管안의 물의 흐름을 檢知하여 경보 신호를 울려주는 流水檢知裝置(아람・밸브)와 거품을 내뿜어 鎮火하는 泡「해드」(에어・폼・해드)가 최근 極東 「스프링클러」에 의해 국내 최초로 개발, 국가검정에 합격함으로써 건설업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流水檢知 장치란 물의 흐름을 檢知하여 경보신호를 울려주는 장치로 자동 경보기에 의한 방식과 流水作動器에 의한 방식이 있다. 즉 「스프링클러・해드」가 화재를 감지, 작동하면 流水檢知장치는 즉각 水源으로부터 물을 퍼울려주는 「펌핑」작업을 자동적으로 진행하면서 경보를 울려주는 것으로 「스프링클러」「시스템」에는 필수적인 것. 한편 泡「해드」는 거품을 내뿜어 鎮火하는 器機로 정유소・위험물창고 등에 설치, 경보 및 소화를 자동적으로 행하도록 되어있다.

當該 減價償却 資產의 取得價額에서 残存價額(基礎價額)에 該當資產의 耐用年數에 따른 傷却率을 곱하여 計算한 각 事業年度의 傷却範圍額이 每年 均等하게 하는 傷却方法을 말한다. 主로 建物 工作物構築物 等에 適用되는 公式的하나로 減價 累計額은 다음 算式으로 求한다.

$$\text{減價累計額} = \text{再調達原價} \times (1 - \text{殘價率}) \times \frac{\text{經過年數}}{\text{耐用年數}}$$

이 경우 建物의 殘價率을 考慮하지 않을 때에는 再調達原價를 $\times \frac{\text{過年數}}{\text{耐用年數}}$ 가 된다. 또한 直接鑑定價格을 求하는 公式은 다음과 같다.

$$\text{鑑定價格} = (\text{再調達原價} - \text{殘存價格}) \times \frac{\text{將來保存年數}}{\text{耐用年數}} + \text{殘存價格}$$

(사) 耐用年數

耐用年數는 物理的으로 存續 可能한 耐用年數와 機械的 經濟的 耐用年數가 있으며 一般的으로 經濟的 耐用年數를 標準으로 使用하고 있다. 한편 法人稅法 施行規則 第 27條 別表에 依한 固定資產 耐用年數表를 減價償却의 耐用年數로 使用한다. 特히 修繕·補修 等으로 因하여 存續 可能한 年限이 延長되는 경우에는 이 點을 考慮하여야 한다.

(2) 間接의 評價方法

法施行規則에서 評價方法을 提示하고 있으나 建物主의 非協助에 依하여 同方法으로 價額을 評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間接의 方法에 依하여 評價할 수도 있다.

$$\begin{aligned}\text{現存價額} &= \text{再調達價額} - \text{減價額} \\ \text{減價額} &= \text{再調達價額} \times \text{總減價率}\end{aligned}$$

總減價率 = 經年減價率 \times 經過年數
同方法에 依한 評價時に 再調達價額의 調査는 評價對象 機械와 同一種類 同一 用途 規模 型式 性能의 機械를 再調達하는데 必要한 價額이 調査되어야 하며 特히 同資料를 間接의 으로 利用하는 하나의 方法으로써 韓國鑑定院이 調査한 "動產時價調查表"에 依據 評價하고자 하는 機械의 價額을 準用하여 評價할 수도 있다. 本 調查表를 利用함에 있어서 注意할 點은 機械의 名稱 規格이 同一한 品名일치라도 製作年度 性能 및 附帶施設의 有無 等에 따라 價格의 差異가 심할 것이므로 同資料를 絶對의 基準으로 利用하기 前에 該機械設備에 對한 充分한 事前 調査가先行되어야 한다. 其他 資料로서 建物主의 積極의 協助가 이루어진다면 貸借對照表上의 價額 내지 鑑定 專門機關이 鑑定한 金額 等을入手可能하다는 同資料들을 利用하여 安全點檢實施 때에 check하여 評價年度를 참작하여 經過年數 만큼의 物價上昇率 등을 考慮하여 調整한 價額을 時價로 代身하는 方法도 利用할 수 있다.

7. 適用上の 注意

基準額表는 우리나라의 標準建物에 對한 評價 method을 提示한 것이므로 個個 建物의 時價를 算定함에 있어서多少 適用上에 어려움이 대두하게 될 것이다. 즉 基本 設定基準 以上的 建築材料를 使用한 建物 및 特殊用途로서 特別히 構造된 建物에 對하여 事前에 充分한 調査(survey)에 依據 이를 別途로 补正하여야 하며 더욱이 本 基準額表는

保險金額을 策定함에 新築單價를 基準으로 하고 있는 바 建物의 建築年度가 몇년 經過한 것과 一部建物은 建築法 또는 關係法規에 複선 未達되는 建物에 대하여서는 保險價額決定에 있어서 응통성이 있게 用이되어야 한다. 따라서 契約締結時에 點檢에 依한 建物의 構造, 種別, 級數, 建築年度, 維持管理狀態 等을 把握하여 保險價額을 算定하고 있으며 同資料에 依據 評價한 價額이 建物主와의 合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同法 施行規則 第 2條의 2에 依據 財務部長官이 委嘱한 時價調查會에 붙여 決定하는 方法을 利用하고 있다. 한편 契約引受 時點에서 基準額에 依하여 評價한 價額이 保險契約者에게 絶對視되어 「既評價保險」(valued policy)으로 誤認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點에 對하여서는 損害補償時의 算定基準은 損害發生時點과 事故發生時點과의 사이에 物價上昇率이 높으면 그 差異가 크게 發生한다는 契約者에게 대한 充分한 說明이先行되어야 한다.

또한 同 基準額表가 單純히 保險價額算定에만 使用될 것이 아니라 同 基準額表作成 内訳書를 利用通用한 建物에 罹災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損害査定資料로서도 活用되어 可能한 實損害額을 补償할 수 있는 方法을 講究, 保險契約者와 罹災補償에 따른 問題點을 다소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同 基準額表가豫見하지 못했던 問題點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런 矛盾點乃至 問題點을 계속 补完해 나갈 것이다.

<끝>